

「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」

일부개정 2021. 8. 13. 규정 제850호

1. 개정이유

- 학생 징계 관련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학생 징계 시 공개범위 최소화(안 제9조제2항)
- 징계 심의의결 기한 명문화(안 제15조)
- 학생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징계처분 재심의 조항 신설(안 제14조의2)
- 인권침해를 한 자 처벌근거 마련(안 제16조)
-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변경,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(참고)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붙 임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「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」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학생증발급**” 을 “**학생증 발급**” 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**의하여**” 를 “**따라**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**5인**” 을 “**5명**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중임**” 을 “**연임**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제2호의 “**제정 및 개정**” 을 “**제·개정 및 폐지**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의 “**교무위원회**” 를 “**교무회**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“**기타**” 를 “**그 밖에**” 로 한다.

제8조 중 “**학과장**” 을 “**학과장 등**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**각 부서장 및 전 교수**” 를 “**해당부서장 및 학과장**” 으로, “**하며, 그 결과를 교내에 공고한다.**” 를 “**한다**” 로 한다.

제10조제2호의 경기력상 수상대상(기준)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의 “**기타**” 를 “**그 밖에**” 로 하며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**훈련계획에 따른 체력측정평가결과 향상도가 현저한 자**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3항 단서 중 “**처분 일**” 을 “**처분일**” 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**징계요청 및 구비서류**)” 를 “(**징계요청 및 구비서류 등**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시는 다음**” 을 “**시에는 다음 각 호의**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기타**” 를 “**그 밖의**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발생시**” 를 “**발생 시**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제3항 규정에 의한**” 을 “**제3항에 따른**” 으로 한다.

제14조에 제5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**위원회는 징계 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**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징계처분의 재심의)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징계처분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징계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
3.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

제15조 중 “**학과장의 의견을 들어**” 를 “**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**” 으로, “**의거 무기정학을 해제한다**” 를 “**따라 무기정학을 해제할 수 있다**” 로 한다.

제16조 중 “**1에**” 를 “**어느 하나에**” 로 하며,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별	징 계 사 유	최초징계범위
14	인권침해를 한 자	근신 이상
15	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	근신 이상

제17조 제1항 중 “**개전의 정이**” 를 “**뉘우치는 정도가**” 로, “**봉사명령**” 을 “**감면 또는 봉사명령**” 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**기타수혜**” 를 “**그 밖의 수혜**” 로 한다.

제21조 중 “**회원이 최소 10명 이상**” 을 “**최소 10명 이상의 회원**” 으로 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**다음**” 을 “**다음 각 호**” 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**단**” 을 “**다만**” 으로, “**홍보후**” 를 “**홍보 후**” 로 한다.

제23조 제1항 중 “**집회·행사허가원**” 을 “**집회·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집회·행사 허가원을**” 으로, “**제출**” 을 “**제출하고**” 로 한다.

부 칙(제850호, 2021. 8. 1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상·벌,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, <u>학생증발급</u>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학생증 발급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학생지원에 관하여 따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<u>의하여</u> 처리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, 훈련학생처장, 사무국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<u>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훈련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훈련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<u>중입</u>할 수 있다. ④ ~ ⑥ (생 략)</p>	<p>제3조(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5명</u>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<u>연임</u>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(생 략) 2. 학생회칙 <u>제정 및 개정</u>에 관한 사항 3. ~ 6. (생 략) 7. 징계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<u>교무위원회</u>에 상정한다. 8. (생 략) 9. 10. 삭 제 11. <u>기타</u>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4조(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제·개정 및 폐지</u>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----- <u>교무회</u>-----. 8. (현행과 같음) 11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<p>제8조(상벌에 대한 의견 청취) 상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나 지도교수 또는 <u>학과장</u>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제8조(상벌에 대한 의견 청취) ----- ----- ----- <u>학과장 등</u>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상벌 통보) ① (생 략) ② 훈련학생처장은 확정된 포상 및 징계처분을 <u>각 부서장 및 전 교수</u>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<u>하며, 그 결과를 교내에 공고한다.</u></p>	<p>제9조(상벌 통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해당부서장 및 학과장</u>----- ----- ----- <u>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제10조(포상의 종류 및 대상)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졸업포상 : 졸업을 하는 자로서 재학기간중 타학생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우수졸업생으로 추천 포상할 수 있다. 다만,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와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상대상(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최우수상</td> <td>졸업석차 1위인 자 ① ~ ④ 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기력상</td> <td><신 설> ⑤ <u>기타</u>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로상 (총장 표창장)</td> <td>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등상 (총장 표창장)</td> <td>평균 평점 3.8이상인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4. (생 략)</p>	종류	수상대상(기준)	최우수상	졸업석차 1위인 자 ① ~ ④ (생 략)	경기력상	<신 설> ⑤ <u>기타</u>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	공로상 (총장 표창장)	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	우등상 (총장 표창장)	평균 평점 3.8이상인 자	<p>제10조(포상의 종류 및 대상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종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상대상(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최우수상</td> <td>졸업석차 1위인 자 ① ~ ④ 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기력상</td> <td>⑤ <u>훈련계획에 따른 체력측정평가결과 향상도가 현저한 자</u> ⑥ <u>그 밖에</u>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로상 (총장 표창장)</td> <td>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등상 (총장 표창장)</td> <td>평균 평점 3.8이상인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	종류	수상대상(기준)	최우수상	졸업석차 1위인 자 ① ~ ④ (생 략)	경기력상	⑤ <u>훈련계획에 따른 체력측정평가결과 향상도가 현저한 자</u> ⑥ <u>그 밖에</u>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	공로상 (총장 표창장)	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	우등상 (총장 표창장)	평균 평점 3.8이상인 자
종류	수상대상(기준)																				
최우수상	졸업석차 1위인 자 ① ~ ④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
경기력상	<신 설> ⑤ <u>기타</u>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
공로상 (총장 표창장)	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																				
우등상 (총장 표창장)	평균 평점 3.8이상인 자																				
종류	수상대상(기준)																				
최우수상	졸업석차 1위인 자 ① ~ ④ (생 략)																				
경기력상	⑤ <u>훈련계획에 따른 체력측정평가결과 향상도가 현저한 자</u> ⑥ <u>그 밖에</u>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																				
공로상 (총장 표창장)	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																				
우등상 (총장 표창장)	평균 평점 3.8이상인 자																				
<p>제12조(경기력 포상자의 선정기준) ① (생 략)</p> <p>② 대회에 출전하여 다음 각 호의 성적을 낸 자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기타</u>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</p>	<p><삭 제></p>																				
<p>제13조(징계의 종류 및 기간 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미만으로 하고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으로 한다. 단, 정학 처분을 받은 자는 <u>처분 일</u>로부터 해제일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는 정지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13조(징계의 종류 및 기간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----- <u>처분일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
<p>제14조(징계요청 및 구비서류) ① (생 략)</p> <p>② 징계 요청 <u>시는 다음</u>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참고서류</p> <p>③ 각 학과장은 징계사유가 <u>발생시</u>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생활관 수칙 위반자는</p>	<p>제14조(징계요청 및 구비서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시에는 다음 각 호의</u>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③ ----- <u>발생 시</u> ----- -----.</p>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생활관장이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④ 학생지도위원장은 <u>제3항 규정에 의한</u> 징계요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.</p> <p>④ ----- <u>제3항에 따른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위원회는 징계 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4조의2(징계처분의 재심의)</u>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징계처분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. 징계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.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5조(무기정확의 해제) 훈련학생처장은 지도교수 또는 <u>학과장의 의견을 들어</u> 소정의 절차에 <u>의거 무기정확을 해제한다.</u></p>	<p>제15조(무기정확의 해제) ----- ----- <u>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</u> ----- <u>따라 무기정확을 해제할 수 있다</u>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6조(징계사유 및 범위) 다음 각 호의 <u>1</u>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에 처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항별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징 계 사 유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최초징계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13.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tr> <td><u><신 설>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4</u></td> <td><u>기타</u>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근신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별	징 계 사 유	최초징계범위	1. ~ 13.	(생 략)	(생 략)	<u><신 설></u>	<u><신 설></u>	<u><신 설></u>	<u>14</u>	<u>기타</u>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	근신 이상	<p>제16조(징계사유 및 범위) ----- <u>어느 하나에</u> -----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항별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징 계 사 유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최초징계범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13.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4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인권침해를 한 자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근신 이상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5</u></td> <td><u>그 밖에</u>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근신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별	징 계 사 유	최초징계범위	1. ~ 13.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<u>14</u>	<u>인권침해를 한 자</u>	<u>근신 이상</u>	<u>15</u>	<u>그 밖에</u>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	근신 이상
항별	징 계 사 유	최초징계범위																							
1. ~ 13.	(생 략)	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
<u><신 설></u>	<u><신 설></u>	<u><신 설></u>																							
<u>14</u>	<u>기타</u>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	근신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항별	징 계 사 유	최초징계범위																							
1. ~ 13.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
<u>14</u>	<u>인권침해를 한 자</u>	<u>근신 이상</u>																							
<u>15</u>	<u>그 밖에</u>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	근신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7조(봉사명령) ① 제16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<u>개전의 정이</u> 뚜렷한 자에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봉사명령</u>으로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7조(봉사명령) ① ----- --- <u>뇌우치는 정도가</u> ----- ----- <u>감면 또는 봉사명령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자격제한 및 수혜금지)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회 각종 간부직책 및 장학금 등 <u>기타수혜</u> 혜택을 중지시킬 수 있다.	제19조(자격제한 및 수혜금지) ----- ----- <u>그 밖의 수혜</u> -----.
제21조(단체의 규모) 신규 단체의 규모는 <u>회원이 최소 10명 이상</u> 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목적이 동일할 경우 통합 등을 통하여 동아리의 난립을 예방하며 건전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.	제21조(단체의 규모) ----- <u>최소 10명 이상의 회원</u> ----- ----- -----.
제22조(단체조직 및 승인) 학생회 산하단체 (동아리)를 조직할 때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단체승인신청서에 <u>다음</u> 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학생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u>단</u> , 1학년은 1학기 <u>홍보후</u> 1학년 2학기에 등록한다. 1. ~ 6. (생 략)	제22조(단체조직 및 승인)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</u> ----- ----- <u>다만</u> ----- ----- <u>홍보 후</u>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집회·행사허가원 제출 절차) ① <u>집회·행사허가원</u> 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3일 이전에 훈련학생처로 <u>제출</u>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(생 략)	제23조(집회·행사허가원 제출 절차) ① <u>집회·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집회·행사허가원</u> ----- ----- <u>제출하고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	부 칙(제850호, 2021. 8. 13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